

1. 개정 이유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확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결격사유, 당연퇴직) 삭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휴직 사유 신설, 저 연차 직원의 연가 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특별휴가 항목·사용 일수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주체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시 선발 주체를 지방우정청장에서 총괄 우체국장까지 확대함

나.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 삭제(현행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

-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종전 조문을 삭제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2제1항)

- 현재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의미가 모호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준하여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 계산 시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통일

라. 휴직 사유 신설(안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및 제72조제5호에 준하여 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외국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를 신설함

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직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준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바.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27조의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 준하여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30조제5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준하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30조제10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준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가 부여되었던 것을,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차.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30조제12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5항에 준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 일수를 더하도록 함

카.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준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타. 기타 용어 정비(안 제3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유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조문의 주어를 종전의 “총괄우체국장 또는 별정우체국장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우정청장”을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제6조”를 “법 제8조제2항”으로,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2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7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게”를 “임신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으로, “승인하되”를 “사용할 수 있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를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으로, “있도록 해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세 이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국장 국장 또는 여성직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을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10항 본문 중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를 “자녀(제1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1. 여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

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정자 채취일에 1일

별표 6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으로 하고, 같은 표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생략)	제3조(직원의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② ---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삭 제>
제8조(당연 퇴직)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	제8조(당연 퇴직) <삭 제>

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 퇴직된다.

③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제6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삭 제>

③ -----

----- 법 제10조의2제2항-----

-----.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8조제2항-----
-- 법 제10조의2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 -----

-----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
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22조(휴직) ① (생략)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
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
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6. (생략)

<신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호 또
는 제3호-----

-----.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
하게 된 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7조(연가 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 ③ (생 략)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가 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2항-----
-----.

③ ----- 제2항-----

른다.

제30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

제30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 사용할 수 있되-----

-----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할 -----
-----.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⑥ · ⑦ (생략)

⑧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⑨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

④ -----

---- 사용할 -----.

-----.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사용할
할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국장 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

----- 사용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⑨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은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 사용할 수 있다.

⑩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 <단서 삭제>

1. 여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

<신 설>

⑪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한부모가족지

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제외수
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
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
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일)

2. 남성: 정자 채취일에 1일

⑪ -----

----- 사용할 -----.

1. ~ 4. (현행과 같음)

⑫ -----

자녀(제11항제1호에 따른 어린
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遠隔地)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
-----.

⑬ -----

----- 사
용할 ----.

<별표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

--.